

『「동물보호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 개정 촉구 건의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의원입니다.

『「동물보호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 개정 촉구 건의안』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「동물보호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」 개정 촉구 건의안』에
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2호(등록대상동물) 및 「동법 시행령」
제3조(등록대상동물의 범위)에서 동물등록대상을 월령(月齡)
2개월 이상인 개로 규정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의 등록이
배제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개
이외에 고양이, 토끼 등의 반려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
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.

또한 동물등록 누락 최소화와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 「동물보호법」 제12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의 등록의 무자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.

- 실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·보호된 유실·유기 동물은 13만 5,791마리로 전년 대비 12% 증가하였으며, 개 75.4%, 고양이 23.5%, 기타 1.1%로, 운영비용은 23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구조된 유기 동물 중 고양이와 기타(토끼 등) 동물의 비중이 25%에 육박하며, 버려진 고양이에 대한 학대와 토끼 등 유기 동물에 의한 문화재 훼손과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반려동물 천만시대,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위해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,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,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의 등록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「동물보호법」 제12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및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(등록대상동물의 범위)의 개정을 건의합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
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건의안 제안 설명을
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